#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07

발의연월일: 2022. 9. 29.

발 의 자:이용선・김정호・문정복

민형배•박용진•양원영

윤준병 • 이용빈 • 정성호

홍영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계획 수립 주기를 3년 으로 하는 한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 한 협력을 통해 소공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행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3항 및 제6조 제3항 신설 등).

#### 법률 제 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5년마다"를 "3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를 "시·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통계자료 조사 등)"을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 과 협의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
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	획의 수립) ①
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u>5년마다</u> 도시형	<u>3년마다</u>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	제6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
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
	승)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	2

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행 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 청할 수 있다.

<신 설>

#### ③ (생 략)

제7조(통계자료 조사 등) ① 중소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필요한 국내외 도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항의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

<u>시·도</u>
지사에게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 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 하여 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 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공 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 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자료를 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 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 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 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 이를 공표하여 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 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 과 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 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생략)